축산법 시행규칙 [별지 제 44호 서식]

발급번호 : 0507-6861

축산물 (돼지) 등급판정확인서

『축산법』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26년 10월 23일

축산물품질평가사 소속 : 충북지원

성명 : 민재욱

신청인	성 명	김남욱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129-81-30202
	업 소 명	(주)팜스코	업태유형	기타
	주 소	경기도 안성시 제2공단4길 33		
도축장	업 체 명	(주)팜스코	등급판정일자	2026년 10월 22일
	소 재 지	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54	043-535-3412	

(단위 : 두)

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
110287000872(72)	1+	110287000872(91)	1+	110287000872(107)	1
110287000872(73)	1	110287000872(92)	1+	110287000872(108)	1
110287000872(74)	1+	110287000872(94)	1+	110287000872(109)	1
110287000872(75)	1	110287000872(95)	1+	110287000872(110)	1
110287000872(76)	1+	110287000872(96)	1	110287000872(111)	1
110287000872(77)	1+	110287000872(97)	1+	110287000872(112)	1
110287000872(79)	1+	110287000872(98)	1	110287000872(113)	1+
110287000872(80)	1	110287000872(99)	1+	110287000872(114)	1
110287000872(81)	1+	110287000872(100)	1+	110287000872(115)	1
110287000872(83)	1+	110287000872(101)	1	110287000872(116)	1
110287000872(85)	1+	110287000872(102)	1+	110287000872(117)	1+
110287000872(86)	1+	110287000872(103)	1	110287000872(118)	1
110287000872(88)	1	110287000872(104)	1+	110287000872(120)	1+
110287000872(89)	1	110287000872(105)	1	110287000872(121)	1
110287000872(90)	1+	110287000872(106)	1+	110287000872(122)	1+

전체 : 45두 (1+ 등급 : 24 1 등급 : 21 2 등급 : 0 등외등급 : 0)

발급횟수 : 1건 발행일자 : 2026-10-23 10:19:28

※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www.ekape.or.kr) "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"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납품내역은 『축산법 시행규칙』 제 45조 제 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
※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지원실(044-410-7000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 [백상지 80 g/㎡ (재활용품)]

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0.4.16.>

원본대조필

제 충북10-20261022-0011-0 호

도축검사증명서

1. 가 축 의 종 류 : 돼지
2. 두수 및 이력번호(소,돼지,닭,오리만 해당합니다): 84 (110287000872)
3. 중 량 : 지육 7600 kg, 내장 등 기타 1176 kg
4. 작 업 장 명 : (주)팜스코
5. 검 인 번 호 : 충북10
6. 도 축 일 : 2026년 10월 22일
7. 도 축 의 뢰 인 : 주소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575-1
   성명 김남욱 의뢰업소 (주)팜스코
8. 안전관리인증농장(HACCP)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 : [ ]여, [O]부
9. 수입소의 경우
   - 수출 국가명 :
   -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여부 :
10.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: 폐기(30.5 kg), 식용 외의 용도전환(0 kg)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1조 제1항 ·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

2026년 10월 22일

검사관 소 속 :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음성축산물검사소

성 명 : 김진아 (서명 또는 인)

(수의사 면허번호 : 13427)